

# 이사회 규정

한온시스템 주식회사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의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제 2 장 구 성

###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의장)

이사회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 3 장 회 의

### 제6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 단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 (이사회 회의)

이사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 (결의방법 및 부의사항)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1-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 개정 및 폐지 등
-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14) 노조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15)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
-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결손의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4) 자기주식의 소각

###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1-1) 회사 사업기회를 이사 혹은 제 3 자를 위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
-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 5.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9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⑦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⑧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0조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업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이사회 조사 결과 위법, 부당 사실이 확인되면,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해당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 (이사의 임무)**

- ①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 의사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 의사에 대한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 4 항의 청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제13조 (이사회 지원)**

- ① 회사는 이사회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지원팀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독립이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4조 (이사회 평가)**

이사회는 이사회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2015. 06. 10)**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 05. 9)**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 02. 28)**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 10. 29)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6. 2. 11)

### 제1조 (시행일)

- ①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